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8. 12. 13.

사회건설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발의일자 : 2018년 11월 13일

나. 발 의 자 : 유승용 의원 외 3명

다. 회부일자 : 2018년 11월 20일

라. 상정일자 : 제21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제10차 사회건설위원회(2018. 12. 12.)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유승용 의원)

가. 제안이유

-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확산에 기여하고 입양 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제2조)

- 입양가정 지원사업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입양축하금 지원 및 지원대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 이인재)

- 본 조례안은 국내 입양 활성화 및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요보호 아동이 입양 후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하여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제안된 조례안으로 총 9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주요 제정 내용은
 - 안 제1조~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4조에서 입양아동 실태조사, 상담 및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교육, 홍보 등 입양가정 지원을 위한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5조~제6조에서는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입양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대상으로는 입양신고일 1년 전부터 우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로 규정하였으며
 - 안 제7조에서는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환수에 관한 규정을 두었음.
- 2018. 12월 현재 우리구에는 58명의 입양가정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이들 가정에게는 현재 시비로 입양축하금 및 양육수당이 지급되고 있으며 서울시에는 13개 자치구가 전국적으로는 80개 자치단체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음.
- 본 조례안은 1976. 12. 31. 「입양특례법」 제정 및 수차에 걸친일부개정 을 통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 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돕고 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 측면에서,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이 곤란한 아동에게는

국내 입양 활성화 및 입양 후 가정생활의 원만한 적응을 위하여 정책을 수립·시행도록 하는 책무를 부여하는 한편,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5월 11일을 입양의 날로 정함으로써 국민의 입양가정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입양 촉진과 활성화를 위한 정부시책에 부응하고자 입양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구 입양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해서도 필요한 조례로 사료되며,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현재 입양 아동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축하금, 양육수당, 의료비, 아동교육 지원비 등을 서울시로부터 지원 받고 있으나 자치구 차원에서도 입양가정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입양축하금 지원 관련 본 조례안 시행일을 2019년 7월 1일 부터로 규정하였는 바, 향후 집행부에서는 입양축하금 지원액 결정 및 예산 확보 및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협의 및 홍보 등 시행에 따른 차질 없는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유승용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64
----------	----

발의년월일 : 2018년 11월 일

발의자 : 유승용 의원 외 3명

1. 제안이유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확산에 기여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입양가정 지원사업에 관하여 규정(안 제4조)

다. 입양축하금 지원 및 지원대상에 관하여 규정(안 제5조~제6조)

3. 제정안 : “별첨”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입양특례법」

나. 예산조치: 예산조치 필요

다. 입법예고(2018. 11. 8. ~ 11. 13.):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내에서 출생한 요보호아동이 입양 후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입양아동”이란 「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
3. “장애아동”이란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되는 입양아동을 말한다.
4. “요보호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을 말한다.
5. “입양가정”이란 요보호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말한다.
6. “입양부모”란 입양부모의 양친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7. “입양신고일”이란 입양아동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날을 말한다.
8. “입양기관”이란 법 제20조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이 곤란한 아동에게 건전하게 양육될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대하여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에 필요한 상담,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입양가정 지원사업) 구청장은 요보호아동의 입양 활성화 및 입양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입양가정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입양가정 및 아동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3.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 지원
4. 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5. 입양에 대한 교육, 홍보 및 모범사례 발굴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입양축하금의 지원) ① 구청장은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입양된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축하금(이하 “축하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축하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입양부모는 입양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서식에 의거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 제5조에 따른 축하금 등의 지원대상은 입양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로 한다.

제7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축하금 등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대장관리) 구청장은 축하금 등의 신청 및 지원 대장을 비치·관리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